

◎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-190호

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03월 27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소기업·소상공인공제 사업 범위에 복지·수익사업을 추가하고 공제 사유가 발생한 연락불가자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이 개정(법률 제19183호, '23.7.4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수익 사업계획 보고규정을 정하고 관계기관에 정보 요청을 위해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개정으로 현행 시행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자구 수정 (안 제34조제1항, 제37조제1항, 제38조제1항, 제38조의3)
- 나.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개정으로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소기업·소상공인공제자금의 회계 구분관리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해당 조항 삭제 (안 제36조제1항)
- 다. 중앙회가 해당연도의 수익 사업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보고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지역 또는 유형 등을 달리하여 신규로 수익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2주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(안 제38조의4)
- 라. 관계기관에 연락불가자 정보 요청시 당사자에게 고유식별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(안 제42조의2제2항제4호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림로 180,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제도약과
- 전자우편 : kch777@korea.kr
- 팩스 : 044-204-7869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(전화 044-204-7857, 팩스 044-204-786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대통령령 제 호
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제1항 중 “법 제117조제1호”를 “법 제117조제1항제1호”로, “법 제118조제1호”를 “법 제118조제1항제1호”로 한다.

제36조제1항을 삭제한다.

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18조제1호”를 “법 제118조제1항제1호”로 한다.

제38조제1항 중 “법 제118조제2호”를 “법 제118조제1항제2호”로 한다.

제38조의3 중 “법 제118조의4제1항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””를 “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””로 한다.

제3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8조의4(수익 사업계획의 보고) ① 중앙회는 법 제118조제3항에 따라 해당연도의 수익 사업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 제2항 각 호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거나 지역 또는 유형 등을 달리하여 신규로 수익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공제운영위원회가 끝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사업의 목적 및 내용
2. 소요 예산 및 추진 일정
3. 수익의 창출 및 활용 방안
4. 그 밖에 수익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2조의2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법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에 관한 사무

부 칙

이 영은 2023. 7. 4.부터 시행한다.

< 신·구조문 대비표 >

현 행	개 정 안
<p>제34조(소기업·소상공인공제 가입 등) ① <u>법 제116조에 따라 소기업·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17조제1호에 따른 공제부금(이하 “소기업·소상공인공제부금”이라 한다)을 낼 것과 법 제118조제1호에 따른 공제금(이하 “소기업·소상공인공제금”이라 한다)의 지급을 받을 것을 약정하는 계약(이하 “소기업·소상공인공제계약”이라 한다)을 중앙회와 체결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~ ③ (생략)</p> <p>제36조(소기업·소상공인공제의 구분관리 및 공제운용계획) ① <u>중앙회는 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·소상공인공제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(이하 이 조에서 “소기업·소상공인공제자금”이라 한다)을 관리·운영할 때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34조(소기업·소상공인공제 가입 등) ① ----- ----- ----- 법 제117 <u>조 제 1 항 제 1 호</u> ----- ----- 법 제118조제1항제1호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6조(소기업·소상공인공제의 구분관리 및 공제운용계획) ① <삭제></p>

② ~ ③ (생략)

제37조(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)

① 법 제118조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.

1. ~ 4. (생략)

② (생략)

제38조(소기업·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 대한 대출) ① 법 제118조제2호에 따른 대출은 해당 소기업·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낸 소기업·소상공인공제부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.

② (생략)

제38조의3(제공 요청 과세정보) 법 제118조의4제1항 전단에서 “대통령

② ~ ③ (현행과 같음)

제37조(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)

① 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서

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38조(소기업·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 대한 대출) ① 법 제118조제1항제2호

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38조의3(제공 요청 과세정보) 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에서 “대통령

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”란 「법인세법」, 「부가가치세법」 또는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.

1. ~ 6. (생략)

<신설>

령령으로 정하는 자료”란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제38조의4(수익 사업계획의 보고)

① 중앙회는 법 제118조제3항에 따라 해당연도의 수익 사업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 제2항 각 호의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지역 또는 유형 등을 달리하여 신규로 수익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공제운영위원회가 끝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사업의 목적 및 내용
2. 소요 예산 및 추진 일정
3. 수익의 창출 및 활용 방안
4. 그 밖에 수익 사업의 특성을 고려

<p>제42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(생략)</p> <p>② 중앙회의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</p> <p>1.~ 3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③ (생략)</p>	<p><u>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</p> <p>제42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법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에 관한 사무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--	--